



옥상에서 방수 공사 중 추락



저층 아파트 베란다 지붕 누수를 수리하기 위해 옥상(10m)에 올라가 임시로 방수페인트 공사를 하던 재해자가 작업 도중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



안전작업

TIP

1 안전대 및 부착설비 설치

-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

2 보호구 착용

-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



안전대 및 부착설비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(보호구의 지급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(추락의 방지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(안전대의 부착설비)





옥상에서 방수 공사 중 추락

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착용하세요!

